

☎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  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과장 김철욱(6536)/ E-mail: leokma0817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6-12110호

시행일자 2022. 1. 10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 적용 안내(보건복지부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-75호(2022.1.4.)

3.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,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 병원급 이상의 감염병 관리기관은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병상기준의 예외 적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(대상기관)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감염병 전문 병원
- 동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(거점 전담병원, 감염병전담병원,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)

나. (허가사항)

-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시설기준 비고6에 따라, 섬지역등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바,
- 상기 대상기관들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[별표1]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시설기준 (병상기준)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함

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 1부. 끝.

# 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 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협의회장